

## 大田直轄市旗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430
----------	-----

提案年月日：1994年 5月 27日

提案者：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

### 1. 提案理由

本格的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議會 議政活動의 폭이 점차 擴大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議政活動과 關聯한 議政功勞者 및 議會를 찾는 訪問客등 市의 徽章을 使用할 機會가 늘어감에 따라서 議會議長에게 徽章授與에 關한 選定權을 附與하려는 것임.

### 2. 主要骨子

徽章授與 對象者 選定에 大田直轄市議會 議長도 包含.

(案 第4條 第2項 第3號)

조례 제 호

## 대전직할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기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회장) ① 생략</p> <p>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</p> <p>1~2 (생략)</p> <p>3.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<u>하는 자</u></p>	<p>제4조(회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~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